

# 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조신형, 김학원 의원외 8인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붙 임 참 조
4. 검 토 의 견 : 붙 임 참 조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7월 2일

교육사회위원회  
전문위원 권태환

#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

## 검토보고

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24일 조신형·김학원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# 1. 제안이유

빈곤·위기 아동의 지역 내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육성 하여야 할 시장의 책임을 명시함(안 제2조).
- 나.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시장이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(안 제5조).
- 라.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의 지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함(안 제6조).
- 마. “대전광역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).

### 3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#### 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는 목적을, 안 제2조는 시장의 책임을,
- 안 제3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등의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,
- 안 제5조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,
- 안 제6조는 사업비, 인건비, 기능보강비, 도서 및 교재·교구비 등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,
- 안 제7조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8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9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는 등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,
- 안 제10조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하는 등 위원 회의 위원장에 관한 내용을,
- 안 제11조는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는 등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,
-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는 등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,

- 안 제13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내용을,
-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,

##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- 본 조례안은 빈곤·위기 아동의 지역 내 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, 이는, 법령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 제정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, 제정에 따른 법리적 문제는 없음.
- 또한,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중구, 원주시, 익산시, 아산시, 순천시, 예산군 등으로, 동 자자체에서는 하계캠프, 외국어교실 운영,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추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아동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.  
따라서,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.
- 그러나, 조례안 제5조의 “지원사업”과 제6조의 “사업비의 지원”은 두개의 조례안 모두가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, 중복규정 여부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